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413호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15일

군산시장

문 동 선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목 “총 칙” 을 “총칙”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 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나. 군산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다. 그 밖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3. 삭제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의안심사, 예산심의” 를 “의안 심사, 예산 심의” 로, “ “안건심의

등” ” 을 ““안건심의 등“” 으로, “의장” 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 으로, “회피할 수 있다” 를 “회피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등” ” 을 ““위원회 등“” 으로, “심의·의결 할” 을 “심의·의결할” 로, “회피 하여야” 를 “회피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를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해” 를 “사용·수익해” 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을 “(금품 등의 수수금지)”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의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개 하여야”를 “공개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중 “의장” 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 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금전거래 등 제한)” 을 “(금전 거래 등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를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금융기관” 을 “금융회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전거래” 를 “금전 거래” 로, “의장” 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을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제1항 중 “의장” 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 으로, “신고할” 을 “신고할”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위원회에 자문 하여야” 를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위원회” 를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을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

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21조제6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제공자,”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 하여야”를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산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를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준수여부” 를 “준수 여부” 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위원”” 을 ““위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명이상 9명 이내” 를 “7명 이상 9명 이내”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군산시” 를 “경우 군산시” 로, “1미만” 을 “1 미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 할” 을 “해촉할”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제24조제7항 본문 중 “위촉 하여야” 를 “위촉하여야” 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장”” 을 ““위원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행 한다” 를 “대행한다” 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회피 하여야” 를 “회피하여야” 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개최일 부터” 를 “개최일부터” 로, “통지 하여야” 를 “통지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분의2” 를 “3분의 2” 로 한다.

제29조 중 “요청 하거나” 를 “요청하거나” 로 한다.

제30조 중 “통보 하여야” 를 “통보하여야” 로 한다.

제31조 중 “누설 하여” 를 “누설하여” 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관리 하여야” 를 “작성·관리하여야” 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회규칙)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p>제2조(정의) ① “직무관련자”란 군산시의 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1.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p> <p>2. 군산시 및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p> <p>3. 그 밖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p> <p>②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 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p> <p>③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란 군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 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p> <p>나. 군산시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p> <p>다. 그 밖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p> <p>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p>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 한다.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 등
-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 의원은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제1항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 사용·수익
해-----.

제11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신 설>

<신 설>

<신 설>

제12조(의원 간 금품 등 수수행위 금지) 의
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
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
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
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
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 하여야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
을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
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
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
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 -----.

② -----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
여야 -----.

③ -----

----- 공개하여야 -----.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의원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14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거래 등 제한) ① 의원은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원 상호간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의원은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은 월 3회로 한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영리행위의 신고) -----

-----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

제16조(금전 거래 등 제한) ① -----
----- 직무관련자(의원 상호간 또는 직무관련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금전 거래-- . ----- 금융회사 등-----
-----.

② -----
----- 금전 거래-----
-----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② 의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으로부터 받는 경조사 관련금품 등인 경우
- 2.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인 경우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 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자문 하여야 한다.

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 2. 의원 및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 신고할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군산시의 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

④ 의장과 제2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①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령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 받거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이러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의원은 금품 등을 제공한자(이하 “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품 등을 반환한 의원은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신고한 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

④ ----- 군산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 제5항-----
-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인도경위 등을 기

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 -----

-.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금품

제23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산시 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 3. (생략)
- 4. 이 조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
 한 사항
- 5. (생략)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
 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
 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
 상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되지 못한다.

- 1. ~ 3. (생략)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군산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
 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
 록 한다.

- 1.·2. (생략)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 처
 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
 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제23조(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 군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
 -----.

- 1. ~ 3. (현행과 같음)
- 4. ----- 준수 여부-----
 --
- 5. (현행과 같음)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 -----

 -----.

③ ----- 7명 이상 9
 명 이내-----
 -----.

- 1. ~ 3. (현행과 같음)
- ④ -----
 ----- 경우 군산시 -----

 ----- 1 미만-----.

- 1.·2. (현행과 같음)

⑤ (생략)

⑥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 4. (생략)

⑦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5조(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생략)

② 위원이 제23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 하여야 한다.

제27조(회의)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 해촉
할 -----.

1.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⑦ -----
----- 위촉하여야 -----.
-----.

제25조(위원장) ① -----
“위원장” -----
-----.

② -----

-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피하여야 -----
-.

제27조(회의) ① -----

----- 개최일부터
----- 통지
여야 -----.
-----.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④ (생략)

제29조(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군산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의결사항 통지) 위원장은 자문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31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회의록)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 3분의 2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의견청취 등) -----

----- 요청하거나 -----
-----.

제30조(의결사항 통지) -----
----- 통
보하여야 --.

제31조(자문위원의 비밀유지 의무) -----
----- 누설하여-----
--.

제32조(회의록) -----
----- 작성·관리하여야 -----
--.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의회규칙) 의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 관련)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

소명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회피직무	<input type="checkbox"/> 의안 심사 <input type="checkbox"/> 예산 심의 <input type="checkbox"/> 행정감사·조사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피원인	<input type="checkbox"/> 친족관계로 인해 회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정한 직무활동을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내용				

위와 같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 . .

소명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제4항 관련)

금품 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 주소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 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 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신고자 (서명 또는 인) </div>		

[별지 제3호 서식] (제13조 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활동목적						
활동사유 및 경과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활동기간	. . . ~ . . . (일간)					
활동지역 (방문기관)						
참가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원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자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제13조 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활동 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위원회
개요	목 적			
	지 원 기 관 (단체)		지 원 받 은 내 역	
	기 간		방 문 지 역 (방문기관)	
주요 활동 내역 (일정 또는 활동내역별)				

위와 같이 국내외활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명		선거구분	지역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황	명칭				
	직위		영리행위기간		
	보수	(택) 연월	원월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타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제16조 제2항 관련)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명		정당	
	소속위원회		주소	
신고사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지방의회의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위와 같이 금전거래(부동산 대여)를 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20px;"> 신고자 (서명) </div>				

[별지 제9호 서식] (제20조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소속위원회 (정당)			
<p>※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p>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p>※ 증빙자료 첨부</p>			
<p>신고자 성명 (서명)</p>				

군산시 공고 제2017-422호

공 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군산시 옥외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 광고물 설치 (안 제6조1항)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광고물 설치 조항 마련

2. 전자게시대 설치 및 표출관리 (안 제7조1항)

- 전자게시대(디지털 광고)의 설치 및 운영 조항 마련
- 소상공인등의 광고매체 다양성 확보

3. 불법광고물 시민보상제운영으로 시민참여 강화 (안 제13조)

-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 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조항 마련
- 시민참여의 불법광고물정비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4. 아름다운 간판상운영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안 제14조)

-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 및 품격 높은 간판문화 정착
-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5.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심의방법 다양화 조항 마련
- 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자 심의를 하도록 조항 마련
- 심의위원의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장치(제척,기피,회피) 마련으로 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6. 옥외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시 공개경쟁 (안 제23조제2항)

-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7. 수탁자에 대한 관리장치를 신설하여 감독 강화 및 부패 차단 (안 25조)

-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 및 위법 또는 부정사항 발견 시 필요한 조치 이행
- 계약 취소등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부패 방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3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조례명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4078 /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 건축경관과)
(전화063-454-3612, 팩스063-454-4299, 전자우편(idea38@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축경관과 광고물계(전화063-454-36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호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명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를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 “도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불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 란 제17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서류

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도 조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도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3호의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전자게시대 설치 및 표출관리) ①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10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은 100분의 5이하로 표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 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7일 이내로 한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 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② 표출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며 수수료는 별표 3에 의한다.
- ③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 가. 당해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 다. 당해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

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하여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집인원 및 활동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①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민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토록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일정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벽보(지정게시대에 부착된 벽보 제외)
2. 전단지(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제외)
3. 현수막(지정게시대에 부착된 현수막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광고물

② 실비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4조(아름다운 간판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형성하고 품격 높은 간판문화를 정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상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에 필요한 공모대상, 시상부문, 수상금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이하 “지정게시시설“이라 한다)의 위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간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시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시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

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

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상단광고판, 벽보판, 전자게시대 포함)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3.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지정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는, 게시대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정게시대의 이용현황, 광고물 게시가능일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정게시대 위탁을 받은 업체는, 조례 제32조(수수료)외에, 광고물(현수막, 상단광고판, 벽보, 전자게시대)의 계침 및 철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광고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비용은 시 지정게시대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위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의거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선정된 위탁자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등
2.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을 취득한 자 1명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3.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5. 위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6.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지정계시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부채납시에는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 한다.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지도·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위탁기관에 대하여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의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현수막 지정계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위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위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제4항제5호에 따라 위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

나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 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9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옥외광고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사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제30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1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신고한 사항이 수리되기 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 공무원의 착오 등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 조례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사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지정계시대 위탁운영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16.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8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30만원
- 1㎡ 이상 2㎡ 미만	35만원
- 2㎡ 이상 3㎡ 미만	40만원
2) 면적 3㎡ 이상 5㎡ 미만	48만원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55만원
- 4㎡ 이상 4.5㎡ 미만	65만원
- 4.5㎡ 이상 5㎡ 미만	80만원
3) 면적 5㎡ 이상 10㎡ 미만	95만원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110만원
- 7㎡ 이상 8㎡ 미만	130만원
- 8㎡ 이상 9㎡ 미만	150만원
- 9㎡ 이상 10㎡ 미만	170만원
4) 면적 10㎡	19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 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0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48만원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55만원
- 7㎡ 이상 8㎡ 미만	65만원
- 8㎡ 이상 9㎡ 미만	75만원
- 9㎡ 이상 10㎡ 미만	8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95만원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11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3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5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70만원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190만원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21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30만원
- 35㎡ 이상 40㎡ 미만	245만원
- 40㎡ 이상 45㎡ 미만	26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80만원
5) 면적 50㎡	29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300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30만원
- 면적 5㎡ 이상 10㎡ 미만	5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6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70만원
- 면적 20㎡	75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3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30만원
- 면적 10㎡ 이상 15㎡ 미만	50만원
- 면적 15㎡ 이상 20㎡ 미만	60만원
- 면적 20㎡	7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80만원
	5만원을 더한 금액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150만원
- 면적 10㎡	16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10만원
- 1㎡ 이상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29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35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다) 면적 5㎡	50만원
- 5㎡ 초과하는 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2] <개정 2016.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30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16. . .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32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30,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15,000원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8,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3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15,000원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15,000원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9,000원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400,000원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10,000원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4,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4,000원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일반현수막(상업용)	
- 10㎡ 이하	3,000원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2) 가로등 현수기	
- 3㎡ 이하 1조	2,000원
파. 벽보(50매당)	3,000원
하. 전단(1,000매마다)	3,000원

거. 전자게시대(1건)	3,000원
너.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5.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6. . . >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32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개정 2016. . . >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32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개정 2016. . . >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	13만원 22만원 32만원 42만원 50만원 64만원 75만원 100만원 129만원 13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8만원 12만원 14만원 25만원 33만원 49만원 58만원 67만원

- 2.6㎡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면적 3㎡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8만원
- 1㎡ 이상 2㎡ 미만		12만원
- 2㎡ 이상 3㎡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22만원
- 3.8㎡ 이상 4.4㎡ 이하		25만원
- 4.5㎡ 이상 5.0㎡ 미만		32만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42만원
- 6.1㎡ 이상 8.0㎡ 이하		58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 신고필



비고

1. 표시규격

- 현수막 : 가로 15cm × 세로 15cm
- 현수기 및 벽보 전단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표시기간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조례 제20조에 따른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위탁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군산(시·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 . >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	-----	-----	----	-----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 ○ (시·도)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격 기 한(20 ~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결과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신규 []연장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여부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 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	----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 명
	소 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 시행령」 제49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 시행령」 제50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군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위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제지

위탁기간	20 ~ 20 (년 월)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 시행령」 제50조 및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명칭 및 수량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기구·장비·재정부담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7. . . >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위탁지정서

제 호		
위탁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업소명(단체명)	
	주소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 명칭 및 수량		위탁기간 20 ~ 20 (년 월)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직인

■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17. . . >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법 제16조관련)



-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10cm × 세로 6cm
 2. 표시내용 : 제작사, 연락처
'2000또는 0000'은 허가년도 및 일련번호 표시

군산시 공고 제2017-452호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련조례 개정으로 군산대표축제를 전담하는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축제운동을 도모하고자 함.
- 지속 가능한 민간추진체계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치법규명	개정사항	비고
군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축제’ 를 ‘시간여행축제’ 로 명시 ▶ 추진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 공동위원장 지정, 감사 및 간사 선임, 사무국 설치 ▶ 추진위원회 기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등 예산집행 및 결산, 사업평가, 수익사업 부문 추가 ▶ 추진위원회 공무원 파견 사항 ▶ 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사용 제재 사항 	

3. 의견제출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관광진흥과(T.063-454-3302, F.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 정성희(063-454-33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축제발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군산축제발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 ① 군산시 시간여행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내외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여행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시간여행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시간여행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4.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5. 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
 6. 그 밖의 축제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 <중전의 제4호에서 이동>
-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 ⑤ 감사와 간사는 위원 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 ⑥ 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⑧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⑨ 추진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7조, 제9조, 제15조를 따른다. <중전의 제5항에서 이동>
- ⑩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⑪ 군산시 대표축제의 분야별 유공자 및 수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 <중전의 제7항에서 이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① 대표축제라 함은 전북도에서 시·군대표 축제로 선정된 축제를 말한다.</p> <p>② 군산시 대표축제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축제관련 전문가 및 축제발전에 적합한 자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④ 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표축제 종합계획의 수립 2. 대표축제 프로그램 발굴·육성 3. 축제의 주관과 행사진행 지원 <p><신 설></p> <p>4.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⑤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위원의 해촉, 수당 등은 조례 제5조~9조, 제14조를 따른다.</p> <p><신 설></p>	<p>제11조(시간여행축제 육성 및 지원) <삭 제></p> <p>① --- <u>시간여행축제</u>----- ----- -----.</p> <p>② 제1항----- <u>시간여행축제 추진위원회</u>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 <u>내외</u>----- -----.</p> <p>④ <u>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부시장은 공동위원장이 된다.</u></p> <p>③ <제2항에 따른 삭제>-----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간여행축제</u> ----- 2. <u>시간여행축제</u> ----- 3. <u>시간여행축제</u>----- 4. <u>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u>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u>사업추진 결산 및 평가</u> <p>⑤ <u>감사와 간사는 위원중에 선임하고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u></p> <p>⑨ <u>추진위원회</u>----- 위원----- ----- <u>제5조~7조, 제9조, 제15조</u>-----.</p> <p>⑥ <u>추진위원회는 시간여행축제 운영을 위</u></p>

⑥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 설>

⑦ (생 략)

<신 설>

해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⑩ -----
추진위원회-----

----- 있으며, 추진위원회에서는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⑪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7-34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대로2-8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8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금동 53-1번지의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8호선)사업
 - 나. 명 칭 : 동백대교~해망IC 접속도로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확포장 L=70m, B=30m→40m (A=401.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3. 3. ~ 2018. 2. 28.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금동	53-1	대	243.1	243.1	우경민 (지분1/2)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102동1204호 (효자동3가, 서부신 시가지아이파크)	부안수산업 협동조합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26 (평화동지점)	
						추진엽 (지분1/2)	군산시 공향로 39-1 (소룡동)			
2	금동	51-4	대	158.0	158.0	유한회사 와이즈	군산시 소룡2길 42 (소룡동)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금암동, 나운동 지점)	
계				401.1	401.1					

7.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사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금동 53-1	1층(대중 음식점)	경량철골조	477.15㎡	120㎡	우경민 (지분1/2)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90, 102동1204호 (효자동3가, 서부신시가지 아이파크)	부안수산조 부안동조 부안읍 부안읍 석정로 226(평화동지점)		
		2층(대중 음식점)	경량철골조	477.15㎡	120㎡					
		담장	블록(H=1.7)	-	7m	추진업 (지분1/2)	군산시공항로 39-1(소룡동)			
		바닥포장	콘크리트	-	332㎡					
2	금동 51-4	담장	철재콘크리트 (H=1.5)	-	41m	유한회사 와이즈	군산시 소룡2길 42 (소룡동)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금암동, 나운동 지점)	
		교목	흉고직경 45cm	-	11주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군산시 고시 제2017-3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6-57호(2016.4.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산시 도시계획 시설 (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 시청(도시계획과 ☎454-35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대명동 139-3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가. 종류(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49호선외 1개노선)사업
 - 나. 명칭(변경)
 - 1) 당초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가감속차로 개설공사
 - 2) 변경 : 대명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시설번호	시설결정 내용		기 인가내용			변경 인가내용			
	연장(m)	폭(m)	연장(m)	폭(m)	면적(m ²)	연장(m)	폭(m)	면적(m ²)	증감
중로2-149	186	10~15	186	10	595	146	15	2,382	증1,785m ²
소로3-744	128	6~7	128	6	54	52	1	54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가. 당초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장치성
 - 나. 변경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길 13(진월동)
성명 : (주)하나건설 대표 장치성 / (주)지엔종합건설 대표 정규성

5. 사업기간(변경)

(당초) 2016. 4. 29. ~ 2019. 9. 30. → (변경) 2016. 4. 29. ~ 2020. 6. 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가. 변경 전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대명	139-2	철	18,427	649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지	남구 서문대로 13(진월동)	(주)하나건설		

나. 변경 후

연번	토지소재지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등기부등본)		소유권외의 권리자	
	동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주 소	성 명
1	대명	139-39	철	651	651	(주)지엔종합 건설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4번길 13(진월동)		
2	대명	139-29	철	1,821	1,481	군산시	-		
3	대명	139-36	철	17	15	국토해양부	-		
4	대명	139-33	대	276	276	군산시	-		
5	경암	371-5	대	13	13	군산시	-		
계				2,778	2,436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

시설명	위 치	개설규모				귀속의무자	귀속기관	비고
		폭(m)	연장(m)	면적(㎡)				
				변경전	변경후			
중로2-149	군산시 대명동	15	146	595	2,382	사업시행자	군산시 (관리청)	
소로3-744	139-2번지	1	52	54	54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고시 제2017- 3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 3. 15.
군 산 시 장**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번지		
성명(법인명)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하천명칭	경포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전북 군산시 수송동 761-7외 2필(472, 54-47)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및 군산공업용수도 지장관로 이설 따른 하천점용		
점용면적	696㎡ (영구 162, 일시 534)		
최초허가일	2017년 3월 2일		
점용기간	2017년 03월 02일부터 ~ 영구 (일시점용 :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9월 01일)		

군산시 고시 제 2017 - 4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고시

군산시 경장동 511-3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주택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의 사업개요

- 가. 사업계획승인일 : 2005년 1월 18일(2005 - 1호)
- 나. 건축위치 : 군산시 경장동 511-3번지 일원
- 다. 건축규모 : 아파트 1동, 지하2층/ 지상 15층, 236세대(민간임대)
- 라. 사업주체 : (주)건강건설 대표 이흥재
- 마. 시 공 자 : 알디엠산업개발(주)
- 바. 취 소 일 : 2017. 3. 9.

2. 취소내용 및 사유

- 가. 처분의 내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나. 취소의 사유 :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사 착수기한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원을 제출함에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함

군산시 공고 제2017-24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1-121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97(2016.07.22.)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득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열람 기간 : 2017. 03. 3. ~ 2017. 03. 17.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 개요
 - 가. 사업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해망동 1010번지의 5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1호선)사업
 - 2) 명 칭 : 수산물연구가공거점단지 진입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노선명	시설결정사항			금회 사업 규모				비 고
	폭원(m)	연장(m)	최초결정일	폭원(m)	연장(m)	면적(m ²)		
						당초	변경	
중로1-121	20	82	군산고58 ('16.04.29.)	20	28	527	525	기존도로 확장

※ 변경사유 :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6. 07. 22.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변경)

1)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해망동	1000-206	도	581	24	24	군산시				
2	“	1010	도	12,430	256	256	건설교통부				
3	“	1000-205	철	123	123	123	국토교통부				
4	“	1000-208	대	82	81	79	오정희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00-161			
5	“	1000-160	대	43	43	43	김정은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39 미르마을 108-30			
계		5필지		13,259	527	525					

2) 지장물조서(변경없음)

연번	지장물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소	성명	
1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천막	22.9㎡		국토 교통부	
2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컨테이너	59.7㎡		국토 교통부	
3	군산시	해망동	1000-205	부속건물	천막	36.4㎡		국토 교통부	
4	군산시	해망동	1000-161	가옥	슬라브+ 콘크리트	102.8 ㎡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00-161	오정희	
5	군산시	해망동	1000-160	가옥	슬라브+ 콘크리트	57.7㎡	대전시 중구 용두동 39 미르마을 108-304	김정은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7-33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2017-16호(2017.01.3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사업이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2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 나. 명 칭 :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일부 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층	당 초		변 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주2동 (장례식장)	지하1층	의료시설	224.22㎡	의료시설	125.51㎡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98.7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장
 - 나. 주 소 : 전북 군산시 의료원로 27

군산시 공고 제2017-341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고시 제2015-111호(2015.08.21.) 및 제2016-66호(2016.05.27.)와 관련하여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주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17. 3. 3. ~ '17. 3. 17.)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조촌동 2번지 일원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사업
 - 나. 명 칭 : 군산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단계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광장) 조성공사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64,892㎡ → 69,311㎡ (증 4,419㎡)
 - 가. 도 로(12개 노선) : 45,163㎡ → 50,713㎡ (증 5,550㎡)

연번	노 선 명	실시계획(기정)			실시계획(변경)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	폭원(m)	연장(m)	면적(㎡)	
	계	-	2,752	45,163	-	3,364	50,713	
1	대로1-4	35~38	164	401	35~41	164	789	
2	대로2-4	30~33	249	226	30~33	249	226	
3	대로3-6	25~28	343	1,040	25~31	894	3,231	

연번	노 선 명	실시계획(기정)			실시계획(변경)			비고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면적(m ²)	
4	대로3-47	25~31	715	18,575	25~31	715	18,575	
5	대로3-48	25~31	422	11,883	25~31	483	13,504	
6	중로2-142	15	170	2,585	15	170	2,585	
7	중로2-143	15	311	5,273	15	311	6,264	
8	중로2-147	15	92	1,449	15	92	1,449	
9	중로2-148	15	129	1,997	18.5	129	2,356	
10	중로3-74	12	49	602	12	49	602	
11	중로3-75	12	68	838	12	68	838	
12	소로3-773	7	40	294	7	40	294	

나. 녹 지(6개소) : 16,687m² → 16,240m² (감 447m²)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실시계획면적(m ²)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16,687	감 447	16,240	
1	녹지	완충녹지108	3,857		3,857	군산고2014-141 (2014.12.26)
2	녹지	완충녹지113	1,865	감 392	1,473	
3	녹지	완충녹지114	3,220		3,220	
4	녹지	완충녹지115	2,390		2,390	
5	녹지	완충녹지116	766	증 5	771	
6	녹지	연결녹지117	4,589	감 60	4,529	

다. 광 장(1개소) : 3,042m² → 2,358m² (감 684m²)

연번	시설명	시설의 세분	실시계획면적(m ²)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1	광장	광장32	3,042	감 684	2,358	군산고2014-141 (2014.12.26)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나. 사업시행자 성명 : 페이퍼코리아(주) 대표이사 박건표

(주)디오션시티퍼스트 대표이사 고영호

(주)디오션시티투 대표이사 이명철

7. 사업기간(변경) : 준공예정일 변경 및 단계별 준공

- (당초) 2015. 8. 21. ~ 2017. 12. 31.
 - (변경) 1-1단계 : 2015. 8. 21. ~ 2018. 3. 31. (1-2단계 외 시설)
1-2단계 : 2015. 8. 21. ~ 2019. 3. 31.
(대로3-48(일부), 중로2-142, 중로3-47, 중로3-75)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별도 첨부)
 9.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실음 생략
 10. 관계도서(변경) : 실음 생략
 11. 기타 :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7-384호

보상계획(열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7-34호(2017.3.3.)」 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8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계획(열람)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 개요

-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동 53-1번지의 1필지
 나. 사업 명 칭 : 동백대교 ~ 해망IC 접속도로공사
 다. 개 요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고
		폭원 (m)	연장 (m)	최초결정일	폭원 (m)	연장 (m)	면적 (㎡)	
동백대교 해망IC 접속도로공사	대로2-8	30	3,050	건고525 ('67.7.25.)	40	70	401.1	도로 확포장

- 라.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

2. 보상 대상

- 가. 토지

연번	토 지 지 번		지 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소재지	지 번				주 소	성 명	
1	금동	53-1	대지	243.1	243.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우○○외 1명	
2	금동	51-4	대지	158	158	군산시 소룡2길 ○○○	유한회사 와○○	

나. 지장물

연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주소	성명	
1	금동	53-1	경량철골조	477.15㎡	120㎡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우○○	1층
			경량철골조	477.15㎡	120㎡			2층
			담장 (블록 H=1.7)	-	7m	군산시 공항로 ○○	추○○	
			바닥포장 (콘크리트)	-	332㎡			
2	금동	51-4	담장 (철재콘크리트 H=1.5)	-	41m	군산시 소룡2길 ○○	유한회사 와○○	
			교목 (흉고직경 45cm)	-	11주			

3. 보상시기 : 개별 협의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단, 같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
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공탁

5.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 략 기 간 : 2017. 3. 6. ~ 2017. 3. 20. (15일)

나. 열 략 장 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2) 및
군산시청 게시판

6. 토지·물건조서 : 붙임참조

7. 기타사항

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보상관련 문의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2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서식]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동백대교 해방 IC 접속도로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3.3. (2017-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우○○외 1명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군산시 금동	53-1	대지	대지	243.1	243.1	도시지역	부 안 수산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26	근저당권 설정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3월 일
 사업시행자 군산시장 (인)
 토지의 소유자 우 ○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동백대교 해방 IC 접속도로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3.3. (2017-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추○○의 1명
	주 소	군산시 공항로 ○○○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면 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군산시 금동	53-1	대지	대지	243.1	243.1	도시지역	부 안 수산업 협동조합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26	근저당권 설정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2017년 3월 일
 사업시행자 군산시장 (인)
 토지의 소유자 추 ○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토 지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동백대교 해방 IC 접속도로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3.3. (2017-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유한회사 와○○								
	주 소	군산시 소룡2길 ○○								
토지의 내역										
소재지	지번 (당초 지번)	지목	현실적 인이용 상황	전체면 적 (㎡)	편입 면적 (㎡)	용도지역 및 지구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군산시 금동	51-4	대지	대지	158	158	도시지역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2017 년 3월 일</p> <p>사업시행자 군산시장 (인)</p> <p>토지의 소유자 유한회사 와○○ (서명 또는 인)</p> <p>관 계 인 (서명 또는 인)</p>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물 건 조 서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동백대교 해방 IC 접속도로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17.3.3. (2017-3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군산시장
	주 소	군산시 시청로 17
물건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우○○외 1명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

물건의 내역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면적)	관 계 인			비고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내용	
군산시 금동	53-1	지장물	경량철골조	477.15㎡	부안 수산업 협동조합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26	근저당권 설정	1층
		지장물	경량철골조	477.15㎡				2층
		담장	블록(H=1.7)	7m				
		바닥포장	콘크리트	332㎡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

그 밖에 보상금산정에 필요한 사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2017 년 3월 일
 사업시행자 군산시장 (인)
 물건의 소유자 우 ○ ○ (서명 또는 인)
 관 계 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 공고 제2017-39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시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16-121호(2016.09.30.)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산 시 장
2017년 3월 15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산북동 2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 나. 명 칭 : 폐기물처리시설내 조경부지일부 포장공사
3. 사업 내용 : 잡석포장 L=72.6m, B=2.7m~4.7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유)씨엔지알텍 대표 양민섭
 - 나. 주 소 : 군산시 구암동 271-2번지
5. 사업 기간 : 2016. 9. 30. ~ 2017. 2. 24.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공고 제 2017-397호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 모집 공고

1. 모집인원 및 기능

가. 모집인원 : 7명

나. 기 능 :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

2.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3. 신청자격

가. 군산시 발전과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관심에 있는 자

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4. 결격사유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군산시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

5. 신청서 접수 : 2017. 3. 6. ~ 3. 15.(10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

가. 군산시청 징수과(세외수입계) 방문 제출

나. 지원서 1부

다. 취득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6. 최종 선정자 발표 : 2017. 4. 10.일 개별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징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군산시 징수과 세외수입계(063-454-2512)

2017년 3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만 세)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 소					

학 력 사 항	입학년월	졸업년월	학 교 명	전 공	비 고
			고등학교		
			대학교		

취 득 자 격 증 (※해당사항 기재)	자 격 명		취 득 일	발 급 기 관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직 무
	-			
	-			
	-			

위의 사항은 사실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 . .

작성자

(인)

군산시 공고 제2017 - 421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5.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7. 3. 15.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7. 3. 15.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공인신조	군산시 복지관광국 가족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가족 청소년과
	군산시 복지관광국 식품위생과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임시일상경비 출납	식품 위생과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1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공인폐기	군산시 주민복지국 가족청소년과 일상경비출납원인 (e-세출시스템 전자이미지공인포함)	한글전서체 1.8*1.8		후각	조직개편에 따른 국명칭 변경	가족 청소년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7-32호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고

항만법 제10조에 의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5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공사의 명칭 : 군산항 연안해상운송 계류시설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또는 명칭) : 군장에너지(주) 대표이사 박준영
 - 2)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1) 항만명 : 군산항
 - 2) 공사의 종류 : 비관리청항만공사(토목, 산업설비, 전기)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1) 목 적 : 열병합발전에 필요한 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안정적 공급
 - 2) 사업개요
 - 위 치 : 군산시 소룡동 1665-17번지 지선 공유수면
 - 사업내용 : 계류시설 170m(15,000DWT급 1선석), 도교 80m, 호안증고 100m, 준설 19만^m(준설면적 44,400^m), 이송설비 1식(1,000톤/hr), 전기 및 부대시설 1식
5.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